

의 안 번 호	제 호	의 결 사 항
의 결 연 월 일	2020. . (제 회)	

한 국 조 폐 공 사 법 시 행 령
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홍남기 (기획재정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0. .

법 제 처 심 사 전

1. 의결주문

한국조폐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가. 과태료 부과에 세부기준 마련(안 제11조 신설)

- 한국조폐공사법에 의한 공사가 아닌 자가 한국조폐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세부기준을 마련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한국조폐공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한국조폐공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.

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

과태료의 부과기준(제11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가.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. 다만,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- 1) 위반행위자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」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- 2)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3)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
- 4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나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
다.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(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

2. 개별기준

(단위: 만원)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이상 위반
법 제6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경우	법 제23조제1항	100	250	500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11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 법 제</u> <u>2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</u> <u>과기준은 별표와 같다.</u>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기획재정부 국고과	
연 락 처	(044) 215 - 5121